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53호, 2020. 6. 9. 공포, 2020. 9. 1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정지원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건전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가능 공공기관 규정(제9조의13)

-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차 휴게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개정(제11조의4제1항)

- 공제조합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보험계리사, 세무사, 교통분야 전문가 등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9조의1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제11조의4제1항제1호나목 중 “변호사·공인회계사”를 “변호사·공인회계사·보험계리사·세무사”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교통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13(보조 또는 용자의 신청) <신 설>	제9조의13(보조 또는 용자의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9조의1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① · ② (생략)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1조의4(운영위원회) ① 법 제51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11조의4(운영위원회) ①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	1. ----- ----- ----- ----- ----- ----- -----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생략) 나. <u>변호사·공인회계사</u>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생략) <u><신설></u> 2. ~ 4. (생략) ② ~ ⑩ (생략)	----- -- 가. (현행과 같음) 나. <u>변호사·공인회계사·보험계리사·세무사</u> ----- ---- 다. (현행과 같음) 라. <u>교통분야 정책 또는 연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022